

검 토 보 고 서

1.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총무과

2.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자치행정과

(2011. 6. 30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2011년 6월 14일

4. 근거법령

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[법률 제10344호]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치 조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장의 임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것임

<개정된 주요내용>

- (1) 안 제4조(통장의 임기)제1항에서 “ 다만, 신규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” 라는 조항을 추가 삽입하여 통장의 공석에 따른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
- (2) 안 제4조제2항에서 임기 중 통장의 연령이 65세에 도달한 경우 그 달의 말일까지 재임하도록 하여 임기만료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규정
- (3) 안 제4조제3항에서 통장이 임기 중 해촉되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임기를 보장
- (4) 안 부칙 제1항에서 제4조제2항의 규정은 혼선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11년에 생일의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

(5) 안 부칙 제2항에서 현재 재임 중인 통장도 개정된 제4조를 적용하게 하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 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통장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.

[검토의견]

○ 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6항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의 최 일선인 동행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에 대한 임기는 물론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다 확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장관리 및 운영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대민봉사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안 제4조 제1항에서 “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” 라는 조항이 특정 통장의 장기적 재임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차단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한 통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